

2026

소방기본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
소방승진 소방법령2 핵심

엠북 소방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**스마트폰 수험총서**
- ★ 소방공무원/자격증 기출 지문 중심
- ★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
- ★ 1시간 28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
도서명 : 소방승진 소방법령2 핵심

ISBN : 979-11-7393-272-4

발간일 : 2026-06-13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14,000원



소방승진 소방법령2 핵심

[목차]

제1편 소방기본법(p4)

제2편 화재예방법(p50)

제3편 소방시설법(p103~179)

[비고]

검은색은 소방공무원, 소방자격증 시험

기출문제 지문

하늘색은 빈출(2~3회 이상) 지문

붉은색은 5회 이상 빈출 지문(암기 필수)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편 소방기본법

[목차]

제1장 총칙

제2장 소방장비 등

제3장 소방활동 등

제4장 소방산업의 육성 등

제5장 한국소방안전원

제6장 보칙

제7장 벌칙

[약어]

- 부령은 행정안전부령
- 청장은 소방청장
- 시도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
특별자치도
- 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
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- 소방관서는 소방청, 소방본부, 소방서
- 관서장은 소방관서장(소방청장, 소방본부장
또는 소방서장)
- 대원은 소방대원
- 소방차는 소방자동차
- 안전원은 한국소방안전원
- 원장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장
- 대상물은 소방대상물 또는 대상물

- 위급상황은 화재, 재난/재해, 그 밖의 위급한
상황

-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

제1장 총칙

1. 목적

- (풍수해가 아니라) 화재 예방/경계, 진압
- 위급상황시 구조/구급
- 국민 생명/신체, 재산 보호
- 공공 안녕, 질서 유지, 복리증진

2. 정의

가. 소방대상물

- 건축물, 차량
- 항구에 매어둔 선박, 선박 건조 구조물
- 산림, 인공구조물, 물건
- 단, 항해중인 선박 제외

나. 관계지역

-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이웃 지역
- 화재 예방/경계/진압, 구조/구급 필요

다. 관계인

- 대상물 **소유자**, **관리자**, **점유자**

라. 소방본부장(이하 본부장)

- 시도 화재 예방/경계/진압/조사, 구조/구급

담당 부서 장

마. 소방대

- 화재 진압, 위급상황시 구조/구급

- 소방공무원, 의무소방원, 의용소방대원

바. 소방대장(이하 대장)

- 본부장, 소방서장(이하 서장) 등 위급상황

발생 현장에서 소방대 지휘

3. 소방기관의 설치 등

가) 시도 소방기관

- 대통령령으로 정함

나) 본부장/서장은 시도지사가 지휘/감독

다) 시도지사 직속 소방본부 등

- 소방업무는

· 화재 예방/경계/진압/조사

· 소방안전교육/홍보

· 위급상황 구조/구급

4. **119종합상황실**(이하 **상황실**)

- 설치/운영 기준은 부령

가. **설치**

1) 관서장은 설치/운영 의무

a) 구조/구급 필요 위급상황시,

-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,

- 정보 수집/분석, 판단/전파, 상황관리, 현장 지휘, 조정/통제

b) 소방청, 시도 본부, 소방서에 각각 설치/운영

c) ('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'이 아니라) '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' 에 의한 전산/통신요원 배치, 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 구비

d) 24시간 운영

2) **소방본부**(이하 **본부**) 상황실에 경찰 둘 수 있다

3) 설치/운영은 (대통령령이 아니라) 부령

나. **실장**은 다음 업무하고 기록/관리

- 재난상황 발생 신고접수
- 인력/장비요청 등 사고수습
- 출동지령, 지원요청
- 재난상황 전파/보고
- 재난발생 현장지휘, 피해파악
- 수습 정보수집/제공

다. 상황 보고 (대상)

- 다음 화재시 등 소방서는 본부, 본부는 소방청 상황실에 지체없이 서면, 팩스, 컴퓨터통신 등 보고

1) 사망 5, 사상 10, 이재민 100인 이상

2) 재산피해 50억 이상

3) 11층 이상, 15,000 제곱미터 이상 공장,

화재예방강화지구

- 4) 5층 이상 또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, 요양소
- 5) 항구에 매어둔 1천톤 이상 선박
- 6) 가스/화약 폭발
- 7) 통제단장의 현장지휘 필요 등

5. 소방기술민원센터

가) 청장/본부장이 (소방서가 아니라)

소방청/본부에 각각 설치/운영

- 센터장 포함 18명내

나) 업무

- 민원 처리

· 법령해석

- 질의회신집/해설서 발간
- 현장확인
- 청장/본부장 지시 업무 등

다) (센터장이 아니라) 청장/본부장은 관계 기관 장에 공무원/직원 파견 요청

라) 이외는 소방청에 설치시 청장, 본부에 설치시 (본부장이 아니라) 시도 규칙으로 정함

6.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

- 소방 역사와 안전문화 발전,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청장은 소방박물관,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 설립/운영 가능
- 소방박물관은 부령, 소방체험관은 조례

7.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

종합계획)

가. 종합계획

1) **청장**은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/신체, 재산 보호를 위해 5년마다 수립/시행, 재원 확보 노력 의무

-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거쳐 10월31일까지
수립

2) 내용

- 서비스 질 향상
- 업무 체계 구축, 기술 연구/개발

- 장비 구비
- 전문인력 양성
- 업무 기반조성
- 이동 어려운 자 대상 조치 등

나. (시군구가 아니라) 시도지사는 매년 세부계획을 12월31일까지 수립해 청장에 제출

8. **소방의 날**: 11월 9일

제2장 소방장비 등

1. **소방력**